

2023년도 제2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6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19건(안건번호 제2023-217007호~21794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17007호는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7008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7009호~217020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17021호~217066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

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17067호~217092호는 웹하드, 카페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17093호~21794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9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9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21522호~2201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9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268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음.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님께서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건으로, ●●●●●●●에 영화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 ▼▼▼▼ 주소를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재생할 수 있음.

순번 1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1건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 ■■■■■■ ■■■■ ■■■■■'를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2023. 10. 04.부터 국내 채널 '♣♣♣♣♣'에서 방영 중이며, 개별 VOD 또한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90건이 넘는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 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 내지 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29건임.
(순번 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백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1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백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3번 내지 14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 내지 1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1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 내지 6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이 '◆◆◆◆', '▲▲▲▲' 및 '★★★★'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이며, 총 60건임.
(순번 17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3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15번 내지 60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5번 내지 6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 내지 6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번 내지 86번은 민원인들(실명 3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방송, 공연)·출판·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33건임.

(순번 7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웹소설 ‘♣♣♣♣ ♣♣♣♣’를 판매 중임.

(순번 8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만화 ‘■■■■ ■■■’를 판매 중임.

순번 61번 내지 86번의 33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61번 내지 8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1번 내지 8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87번 내지 9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

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295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악인전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0번은 웹하드에서 예능 '악인전기' 5화~6화 전체분량을 1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14.부터 EN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15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의 1화~9화 전체분량을 49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22.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엑소시스트: 믿는 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1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엑소시스트: 믿는 자'의 1시간 51분 전체분량을 18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18.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87번 내지 93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87번 내지 93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

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7번 내지 93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1700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700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7009호~21702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7021호~21706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7067호~21709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7093호~21794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522호~22011호(순번 1번~490번)는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2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9.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